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인·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에 추가하여 타 신분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시 수당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5급 군무원으로의 승진 심사 시 예상 결원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군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가 (안 제7조)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군인, 군무원 외 특정직공무원을 추가

나. 군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안 제38조의2)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육아휴직자 및 공무상질병휴직자 업무대행 군무원에서 모든 종류의 휴직자 업무대행 군무원으로 확대

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안 제39조)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산입하는 제한 규정 폐지
라. 5급 군무원 예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3조)

5급 군무원 예상 결원에 대한 승진 심사 근거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군인, 군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7조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일반군무원에게”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제43조의 제목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제1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결원(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각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구성) ① (생략)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부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②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5급상당 이상의 <u>별정직공무원</u>	2. ----- <u>별정직공무원</u> 또는 <u>특정직공무원</u> (군인, 군무원을 제외한다)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제37조(인사교류)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u>참모총장</u> 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37조(인사교류) ----- ----- <u>참모총장, 국방부 직할 부대장</u> ----- ----- ----- -----.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① · ② (생략)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③ ----- --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u>

해당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무를 대행하는 일반군무원에게 ----- 「공무원수 당 등에 관한 규정」----- -----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 항제4호에 따른 휴직,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 상으로 인한 휴직, 병가, 출산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 하는 소속 일반군무원	<삭 제>
2.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 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	<삭 제>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 략)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 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40조에 따른 승진임 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 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 한다.	② ----- ----- ----- ----. ----- ----- -----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 간 가.·나. (생 략)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 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 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 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 여 휴직을 하는 경우	1.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 진) (생 략)	제43조(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 진임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제4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할 때에는 일반군무원이 직급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경우와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

③ 제2항에 따른 총결원(제4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illegible]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2) 748 - 5291